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	2025. . .
연 월 일	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(재)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5. 3. 28.

(재)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--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3. 28.

제출자: 고성군수

1. 제안이유

- 가. (재)고성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당항포관광지 홍보, 시설 개선 및 보수 경비를 지원하여 관광자원 활용 효과를 극대화
- 나. 당항포관광지 운영 및 고성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(재)고성문화관광재단이 고성군으로 요청한 출연금에 대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른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(재)고성문화관광재단의 사업

- 가.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종합계획 수립, 시설의 설치, 자원조달, 행사운영
- 나. 당항포관광지 수탁 운영
- 다.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추진
- 라. 지역축제, 문화예술행사(공연·전시 등을 포함한다)의 기획 및 운영
- 마.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과 관련된 협력 및 연계·교류에 관한 업무
- 바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 및 관리
- 사.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
- 아.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 단체 등의 활성화 지원
- 자. 문화·관광 관련 공모사업 및 상품개발
- 차. 국가·경상남도 및 고성군의 위탁한 사업
- 카.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3. 출연의 법적 근거

가. 지방재정법 제18조

나. 고성군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7조

4. 주요내용

가. 출연대상: (재)고성문화관광재단

나. 출연금액: 금4,550,000,000원(금사십오억오천만원) ※ 군비: 100%

※ 당초: 금3,800,000천 원 -> 변경 금4,550,000천 원(증액 750,000천 원)

다. 출연목적: 2025년 당항포관광지 위탁운영

(당항포관광지 인력 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)

라. 출연내용

- 출연금 산출근거

(단위: 천 원)

구 분	산출근거	기정액	경정액	증감	증액사유
출연 사업	합 계	3,800,000	4,550,000	750,000	
	소계(당항포 관광지 운영)	2,540,775	3,290,775	750,000	
	○ 관광지 홍보 및 운영	608,623	638,623	30,000	바이럴 마케팅 및 팸투어 운영
	○ 편의시설운영관리	828,834	938,834	110,000	노후영업시설 보수 및 인테리어 개선
	○ 관광지환경개선	398,902	769,902	371,000	조경시설보강 및 정원조성, 정크아트 입차
	○ 공룡나라식물원운영	109,880	109,880	-	
	○ 전시관 운영관리	234,386	343,386	109,000	전시관 연출 신설 및 유지보수
	○ 당항포관광지(반)시설장비	360,150	490,150	130,000	지구조형 등 노후시설 보수 및 황토 체험시설 설치·운영
	소계(재단사무국 운영)	1,259,225	1,259,225	-	
	○ 재단사무국 운영	1,259,225	1,259,225	-	

마. 2025년 재단 세입세출 내역(예상)

- 2025년 법인 세입: 91.7억 원
 - 이월 및 출연금: 84.7억 원(출연금 45.5, 순세계잉여금 39.2)
 - * 순세계잉여금: 2024엑스포 순수익 32, 2024년 집행잔액 7.2
 - 수익사업: 7억 원(당항포관광지 운영수익 7)
- 2025년 법인 세출: 91.7억 원
 - 당항포관광지 운영, 2025공룡엑스포 추진, 재단사무국 운영

바. 당항포관광지 대규모 투자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

(당항포관광지 조성사업,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등)

사. 출연금 증액에 따른 기대효과

-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당항포관광지 홍보강화
 - 방송매체 및 뉴미디어 활용 홍보를 통한 평시 관람객 증가
-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
 - 기념품점 내부 리뉴얼 등 편의시설 개선으로 방문객 만족도 향상
 - 편의시설 리뉴얼과 재단의 캐릭터 상품개발 추진을 연계하여 관리 수익 증대 도모
- 차별화된 정원 조성
 - 주요 관람 동선의 특색 있는 정원 조성으로 재방문을 증가
 - 꽃 정원 운영으로 비수기(여름) 관람객 유치 효과
- 전시관 리뉴얼 및 기반시설 정비
 - 전시관(주제관, 5D영상관, 영상관 등) 개선으로 관람객 체류시간 증가
- 지역민 고용창출 효과
 - 시설 개선 및 운영 인력 확충으로 지역 일자리 10개 이상 창출 예상

5. 사업비 산출 및 조정 내역: [붙임 1] 참조

6. 관련 법령 발췌문: [붙임 2] 참조

[붙임 1]

○ 고성문화관광재단 요청 사항 검토(조정)

- 관광지홍보 및 운영

(단위: 천 원)

세부사업	요구금액	반영금액	비고
	122,000	30,000	
방송매체 활용 홍보	20,000	0	축제 홍보비 등 유사 중복사업 활용 필요
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	60,000	0	
팸투어 실시	20,000	20,000	
온라인 바이럴 마케팅	10,000	10,000	
홍보물 제작	12,000	0	

- 편의시설 운영 관리

(단위: 천 원)

세부사업	요구금액	반영금액	비고
	150,000	110,000	
영업시설 유지보수	30,000	30,000	컨테이너 구입 재단 자산 증대 활동으로 재단 보유금 활용 필요, 리모델링 사업 예산 일부 반영
기념품 컨테이너샵 구매·설치	20,000	0	
지니매점 리모델링	100,000	80,000	

- 관광지 환경개선

(단위: 천 원)

세부사업	요구금액	반영금액	비고
	500,000	371,000	
공룡의 문 정원 조성	105,000	105,000	당항포 관광지 변화를 위하여 다양한 신규시설 설치가 필요하나, 필요한 최소 범위 내 설치 및 효과적인 시설 운영
플라워 가든 조경시설 보강	100,000	100,000	
공룡동산 조경시설 보강	101,000	101,000	
연못 수경시설 조성	50,000	0	
주제관 하늘정원 조경시설 보강	15,000	15,000	
해안로 조경시설 보강	99,000	20,000	
정크아트 전시 및 체험	30,000	30,000	

- 전시관 운영관리

(단위: 천 원)

세부사업	요구금액	반영금액	비고
	188,000	109,000	
엑스포주제관 리뉴얼 사업	33,000	0	전시관 노후시설 개선 및 신규 관람 요소 위주 반영
한반도공룡발자국화석관 개선	55,000	55,000	
공룡캐릭터관 리뉴얼 사업	20,000	20,000	
영상관(공연장) 리뉴얼 사업	80,000	34,000	

-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 정비

(단위: 천 원)

세부사업	요구금액	반영금액	비고
	300,000	130,000	
전시 관람 동선 경관조명 보강	90,000	50,000	예산 사정에 따라 시설 보수 및 안전시설 개선 예산 반영
야외 엘리베이터 경관조명 보강	50,000	0	
제3주차장 공원 등 보강	40,000	0	
화장실 안내간판 설치	20,000	20,000	
홍보용 전광판 신설	20,000	0	
지구 조형물 도색 및 정비	9,000	9,000	
노후 분전반 교체 및 수선	21,000	21,000	
황토 체험시설	50,000	30,000	

○ 출연금 추가 규모 적정성 검토

- 출연금 증가 사유는 당항포관광지 노후 시설 보수와 시설물 안전 확보, 당항포관광지 신규 볼거리 추가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예산 반영
- 예산의 효과적 활용 및 당항포관광지 운영 수입 증대 노력 등으로 사업비 대비 군비 출연 비율 감소 노력 필요

[붙임2]

관계 법령

[지방재정법]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 28.>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[고성군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]

제5조(재단의 재산) 재단의 재산은 고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출연금,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- 제7조(업무의 위탁) ①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② 군은 재단의 설립, 운영 및 시설운영,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